

## 2. 위원회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4 장 기 획 위 원 회</p> <p>제 13 조(구성) ①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          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직원으로 한다.</p> <p>제 14 조(기능) (생략)</p> <p>제 15 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에는 대학발전분과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둔다.            ② 대학발전분과위원회는 ..(이하생략)            ③ 시설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기획위원회에 보고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</li> <li>2. 건물, 시설물의 이용 및 배치계획</li> <li>3. 환경조성 계획</li> <li>4. 기타 시설에 관한 주요사항</li> </ol> <p>제 16 조(분과위원)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         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 17 조(상임위원) ① 분과위원회에 약간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.            ② 상임위원은 분과위원중에서 총장이 임한다.            ③ 상임위원은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④ 장애학생지원 조직의 장은 시설분과위원회에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.</u></p>	<p>대학시설에 관한 의사결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추가</p>